

Korean Tax Update

October 2020, Issue 76

[조세뉴스]

국세청,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긴 고액체납자 812명 추적조사 실시 [전문보기]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체납자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재산을 편법 이전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악의적 고액체납자 812명을 추적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현재까지 거주지 수색 등을 통한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20년 1월부터 8월까지 총 1조 5,055억 원을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하였으며, 사해행위 취소소송 449건을 제기하고,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290명을 고발하였음. 향후 국세청은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임.

기획재정부, OECD/G20 IF, 디지털세 논의 경과 보고서 공개 [전문보기]

'20.10.8~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제10차 총회(영상회의)를 개최하여 디지털세 장기대책 필라1·2 blueprint 를 승인하고, '20.10.12일 이를 공개하였음. OECD/G20 IF는 이번 blueprint 관련 요약문서에서 코로나 확산 등의 영향을 감안하여 최종방안 합의 시점을 당초 20년 말에서 '21년 중반으로 공식 연장하였으며, blueprint 에 기초해 '21.1월 중 공청회를 개최하여 대기업 등 민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미해결쟁점을 중심으로 추가 논의를 계속하여 '21년 중반을 목표로 최종방안 합의를 추진할 계획임. 기획재정부는 '19.12월 디지털세 대응을 위한 조직을 보강하고, 기업, 전문가, 관계기관 등과 함께 디지털세 민관 TF 를 구성하여 국내쟁점 파악 및 논리 보완에 활용해 왔으며, 공청회 및 후속논의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 TF 를 통해 blueprint 내용을 공유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측 쟁점별 대응방안을 검증·보완하여, 일관된 방향으로 회의 참가·발언, 서면 제출, 기업·전문가 등을 통한 공청회 의견 제출, 국제 공조 등 다각적으로 대응할 계획임.

[판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취소하는 내용의 공급가액을 음수로 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처음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취행위와 별도로 나중의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수취행위도 조세범 처벌법 제 10 조 제 3 항 제 1 호 위반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등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 도 118 판결

-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후 이를 취소하는 의미에서 같은 공급가액에 음의 표시를 하여 작성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경우, 뒤의 공급가액이 음수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행위는 새로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앞선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므로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나아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함으로써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죄가 기수에 이르고, 그 후 이러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취지로 음수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완성된 위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기 위한 기준인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에도 이와 같이 실물거래 없이 발급·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의미에서 발급·수취한 음수의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고려할 필요가 없음.

구 지방세법 제 20 조 제 4 항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의 의미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 35 조가 무효인지 여부 (국승)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 두 47403 판결

- 납세의무자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등기 또는 등록하려면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설령 등기관이 등기신청서의 접수일 다음 날까지 취득세 등의 보정을 허용한다고 하여 취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이 변경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20조 제4항이 정한 재산권 등의 이전 등을 등기 또는 등록하려는 경우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인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정한 바와 같이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한 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35조는 구 지방세법 제20조 제4항의 해석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이거나 이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구 지방세법 제20조 제4항이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더라도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원심을 파기함.

[심판례]

청구법인이 지출한 쟁점해외위탁연구개발비가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취소)

조심 2019 중 3869, 2020. 9. 2.

-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는 “연구·인력개발비”의 한 부분으로서 2014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연구개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위탁비용의 범위는 조특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르는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 나목 1) 마)에 따라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에 위탁 또는 공동연구개발 비용도 세액공제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점, 2017.2.7. 일부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 및 2017.3.17. 일부 개정된 조특법 시행규칙 제7조 제6항에 의하면 국내에 소재한 기업의 전담부서등에 대한 위탁연구개발비만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개정되었는 바, 동 세법개정 이전에는 국외기업에 대한 위탁비용도 연구개발 세액공제의 대상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점, 기획재정부 등 유권해석 사례(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23)에 의하면 조특법 시행령 [별표 6]의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은 조특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규정한 “전담부서등”에 한정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는 점, 조특법 시행령 [별표 6]에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비용을 규정하면서 일반연구개발 세액공제와 신성장동력연구개발 세액공제의 대상을 별도로 구별하고 있지 아니하여 달리 볼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해외위탁개발비를 신성장동력연구개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법인 분할 이전 제기한 법인세 취소소송이 분할 이후 국가 일부패소로 확정됨에 따라 국세환급금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회생계획안에 따라 분할신설된 청구법인이 동 법인세 취소소송을 수계하였으므로 국세환급금은 청구법인에게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조심 2020 서 1848, 2020. 9. 9.

- 청구법인이 회생계획에 따라 분할신설되어 분할전법인이 법인 분할 전에 제기한 법인세 취소소송에 대한 권한을 수계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세환급금은 원칙적으로 국세를 납부한 납세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점, 과세관청이 국세환급금채권을 체납 국세에 충당하기 위해서는 국세환급금채권과 체납 국세가 서로 대립하고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충당되는 국세환급금채권은 납세자에게 직접 발생한 것일 뿐 아니라 상속이나 합병·분할 등으로 포괄승계한 것, 제3자로부터 양수한 것이 포함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분할전법인의 체납 국세가 충당 당시에 발생해 있었던 이상, 이 건 국세환급금을 분할전법인의 체납 국세에 충당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분할신설법인인 청구법인에게 귀속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본사 지방이전법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본사지방이전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기각)

조심 2020 광 1715, 2020. 9. 10.

- 조특법 제127조는 중복지원을 배제하기 위하여 제4항에서 본사지방이전세액감면을 규정한 법 제63조의2 제2항과 투자세액공제를 규정한 법 제11조 등을 동시에 적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본사지방이전세액감면은 납세의무자의 전체 소득을 대상으로 하고 법인세의 과세단위가 사업자 기준이므로 해당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경우 중복지원이 될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계산한 본사지방이전세액감면의 감면대상 소득은 전체 법인의 익금·손금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회계처리한 소득을 별도의 특정 기준(지방으로 이전한 인원비율)을 적용하여 안분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특정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거나 사업별로 구분경리된 소득으로 볼 수 없고, 이러한 점은 조특법 제143조 제1항에서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명시적으로 확인되는 점, 본사지방이전세액감면의 감면대상 소득을 법인의 전체 소득 중 지방으로 이전한 인원 비율로 안분 계산하는 것은 법인의 전체 소득 가운데 지방이전 기여분을 구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감면대상사업 소득을 계산한 것이라기보다는 세액감면을 보완하여 조정(지방으로 이전한 인원이 적을수록 실효 감면율이 낮아지는 효과)하는 개념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본사지방이전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를 중복적용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최초회생계획으로 출자전환한 쟁점주식을 변경회생계획에 따라 무상소각하는 경우, 출자전환한 매출(회생)채권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관련 대손세액인 쟁점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취소)

조심 2019 서 0517, 2020. 9. 15.

- 최초 회생계획에서 '채무의 권리변경에 따라 회생채권자가 주권을 신규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채권액을 출자로 전환하는 경우 신주를 발행하고 신주발행의 효력 발생일에 변제로 같음한다'고 하면서, 실제 주권의 발행이 없었고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 또는 주주총회를 개최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점, 최초회생계획(매출채권출자전환)과 변경회생계획(출자전환한 쟁점주식의 무상소각)은 연결된 하나의 회생사건으로, 매출(회생)채권을 회수하지 못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청구법인이 매출 관련 부가가치세까지 과도하게 부담하게 되는 것은 대손세액 공제를 통해 기업의 과도한 세부담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입법의 취지에 반할 뿐더러, 청구법인의 결산서(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 쟁점매출채권 상당액에 대하여 2013사업연도(출자전환)에 장기성 매출채권(대손충당금)으로 대체하면서 손금불산입(유보)으로, 2016사업연도(무상소각)에 동 충당금을 손금산입(△유보)으로 각 세무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최초회생계획시보다는 출자전환에 따른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여지나 다른 대가 등이 없는 것이 확실시된 변경회생계획시에 비로소 쟁점매출채권의 실질적인 출자전환과 동시에 쟁점전환주식 등의 무상소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므로 쟁점매출채권은 그 소각 시점인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회수불능으로 대손이 확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잔금지급일에 “사실상 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잔금지급일에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와 별도로 등기일에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취소)

조심 2019 지 3835, 2020. 9. 22.

- 청구인은 2003.12.26.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5.2.9. 그 대금을 지급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이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취득세 등은 심리일 현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부과할 수 없고, 이후 청구인이 법원의 판결(2010가합84456)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 잔금지급일에 “사실상 취득”을 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추가로 갖춘 것에 불과하므로 잔금지급일에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와 별도로 등기일에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법리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할 것(대법원 2014두43110)이므로, 청구인이 2005.2.9. 사실상 취득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부과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에서 이 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이 쟁점증축분을 계열사에 무상으로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이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취소)

조심 2019 부 3104, 2020. 10. 15.

- 쟁점증축분이 「부가가치세법」 및 「법인세법」상 무상으로 공급되어 계열사가 수증한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세법상 기본원칙인 경제적 실질과세와 법률적 권리확정주의에 따라 해당 자산을 실질·법률적으로 소유하였는지 여부와 그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 경제적 효익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1두4269, 대법원 84누413 등), 이 건 심리진행 중인 현재까지도 쟁점지방세처분에 대한 다툼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할 때 쟁점증축분에 대한 청구법인과 계열사 간의 법률적·경제적 권리관계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쟁점지방세처분이 정당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과 「법인세법」은 과세대상 및 요건이 다른 독립된 법률이므로 「지방세법」상 취득이라 하여 반드시 「법인세법」상 취득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이는 쟁점증축분은 당초 증축사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스스로의 부담으로 자본적 지출(증축)한 것임에도 기존건물의 등기 형식상 제약으로 취득세가 부과되었다는 점과 쟁점소송 1심판결에서 취득세 부과는 정당하다면서도 취득세 과세대상인 “취득”을 경제적 관점에서 당사자들의 소유의사와 일치할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 쟁점증축분은 증축된 2013년도부터 이 건 심리 중인 2020년까지 약 7년 이상의 기간 동안 증축사의 자산으로 관리·운용 및 회계처리 되었음은 물론, 실제로도 증축사만 사용·수익해 왔다는 점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법」상 청구법인이 쟁점증축분을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계열사에게 무상으로 공급하고, 이 때에 「법인세법」상 계열사가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국심 2000서1222).

[예규]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법인에게 자금 대여 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인정이자를 계상하였으나, 해당연도말에 차입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 다음 사업 연도에 적용해야 하는 이자율

서면-2020-법인-1548, 2020. 7. 7.

-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에 적용하는 이자율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 89 조 제 3 항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동 대여금에 대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대여시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약정기간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게임 구동확인을 위해 직원이 본인 카드로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하게 한 후 카드 사용 금액을 법인이 직원에게 보전해 주는 경우 게임 매출 및 손금 인식 여부

서면-2019-법인-2882, 2020. 7. 28.

- 게임물을 제작·판매하는 법인이 사용자 입장에서 게임이 원활하게 구동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게임, 아이템 등을 직원 개인의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하고 이후 직원에게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보전해 주는 경우 그 신용카드 구매금액과 보전액에 대하여는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것임. 다만 신용카드 구매와 보전이 게임 구동확인 목적인지 여부는 구매·보전 경위, 구매한 게임·아이템 등의 이용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건설사업자가 도급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도급인에게 대여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공사 착공전 대여금 이자율을 변경하는 도급계약을 새로 체결하면서 감소한 이자상당액을 공사금액에 포함하는 경우 해당 이자상당액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포함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622, 2020. 8. 26.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을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 29 조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도급인에게 사업비를 대여

하고 약정한 이자율 변경에 따라 감소한 이자상당액을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하는 경우 해당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제 29 조 제 3 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건축물의 건축 중 토지소유자와 지상권 분쟁으로 인해 공사가 장기간 중단된 경우, 공사중단기간 동안 발생한 차입금의 이자비용을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부동산세제과-2307, 2020. 9. 4.

- 취득세의 취득가격의 항목 및 범위가 기업회계기준상의 취득원가의 그것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차입금은 건축물의 건축을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직접 차입한 자금에 해당하므로, 해당 차입금의 이자비용은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경우라 하더라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전사적자원관리 시스템에 보관된 신용카드 거래정보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부가-2140, 2020. 9. 9.

-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일반과세자인 공급자로부터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또는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처리된 전산매체를 제출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이 구분기재된 신용카드 거래내역을 전송받아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에 보관(「국세기본법 시행령」 제 65 조의 7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 46 조 제 3 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조특법 제 29 조의 7 제 1 항 각 호에 따른 세액공제요건을 충족하고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다음 과세연도 이후 매출액 증가로 중견기업이 된 경우 법인유형이 변경되더라도 동일한 금액을 세액공제 가능한지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283, 2020. 9. 28.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2 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하여 같은 법 제 29 조의 7 제 1 항 각 호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 이후에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같은 법 같은 조 제 2 항에 따른 공제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은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2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임.

[삼정 KPMG 조세본부 소식]

[기고] BUSINESS Watch, 경력단절 여성 세제혜택 받으려면 [기사보기]

Tax 본부 김경조 Director (02-2112-3415)

본 자료는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어떤 기업이나 개인의 특정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의 내용과 관련하여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PMG 삼정회계법인

Tax Center of Excellence

kr-fmtaxtcoe@kr.kpmg.com

© 2020 Samjong KPMG.,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